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8호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5 1 호	고액채납(폐업법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1 5 5 호	공영주차장(남동공단 2호, 소래 5호)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8
○ 공	고 제 1 7 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1
○ 공	고 제 1 7 7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4
○ 공	고 제 1 9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6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2 호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25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3 호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36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4 호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8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5 호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5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7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7 호		『남동구交通安全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5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8 호		『남동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98
○ 보 건 소 공 고 제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08

고 시

○ 고	시 제 1 2 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110
○ 고	시 제 1 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14
○ 고	시 제 1 4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117
○ 고	시 제 1 5 호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고시	139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51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정 차량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사업자 폐업 등으로 통지가 곤란하여 처분예고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2. 운행정지명령일시 : 2019. 2.11.
3. 공고대상 : 불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 1.21. ~ 2. 7.
5. 공고내용 :

가. 불임 차량은 폐업사업자, 상품용 차량의 운행 등의 사유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되어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할 예정이오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인천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에 제출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나. 운행정지 될 경우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차량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는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 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2의 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8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명령 처분 예정 차량 공시송달 공고 내역

구분	차량등록 번호	차종	차량명의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수취인명	주소	사전통지일	반송 사유	운행정지 명령예정일
151	인천80다 5444	이스타나- 쏿6밴	(주)월드교역	120111	(주)월드교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 **블럭*롯데(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7****	한*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 ***호(방이동)			
152	인천30구 5375	누비라1.5	(주)월드교역	120111	(주)월드교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 (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7****	한*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 ***호(방이동)			
153	인천7나1 456	포터슈퍼캡	미진주택건설(주)	124311	미진주택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만수동)	2019. 1.15.	기타	2019. 2.11.
				****	대표사없음				
154	인천1모2 916	그랜저	미진주택건설(주)	124311	미진주택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만수동)	2019. 1.15.	기타	2019. 2.11.
				****	대표사없음				
155	인천30머 2602	프린스1.8A T	(주)두훈	124411	(주)두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롯데(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6****	전*수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광로 ***			
156	인천7고9 335	트레이드	(주)두훈	124411	(주)두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남동공단 ***블럭*롯데(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6****	전*수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광로 ***			
157	인천30다 6498	쏘나타투2. 0골드	(주)동방토건	141311	(주)동방토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 (만수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9****	백*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가동 ***호(구월동)			
158	인천7러2 917	현대마이티 덤프트럭	(주)동방토건	141311	(주)동방토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 성신빌딩*층(만수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9****	백*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가동 ***호(구월동)			
159	인천81가 3857	봉고프런티 어	가천건설(주)	120111	가천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간석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7****	문*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번길 ** (십정동)			
160	25가816 4	쏘나타투1. 8DOHC	제국종합건설(주)	124611	제국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승희빌딩***호(구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2****	김*협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			

161	인천80너 8892	포터초장축	(주)스타폼코리아	110111	(주)스타폼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남동공단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1****	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 ***동 ***호(옥련동,)			
162	25가313 7	에쿠스	(주)스타폼코리아	110111	(주)스타폼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남동공단 ***B-***L(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1****	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 ***동 ***호(옥련동,)			
163	인천70다 8013	카니발	선진다이아공구 산업(주)	110111	선진다이아공구산 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남동공단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5****	전*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 (부개동)			
164	인천30구 4329	스포티지그 랜드	선진다이아공구 산업(주)	110111	선진다이아공구산 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남동공단***블럭*롯데 (T.***-****)(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5****	전*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 (부개동)			
165	86주856 1	포터 II (PO RTER II)	유니켄스(주)	110111	유니켄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블럭*롯데(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9****	홍*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토둔길 ***-			
166	인천30모 3443	무쏘	(주)삼정피에스시 스템	110111	(주)삼정피에스시 스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4****	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전농동)			
167	86구106 0	무쏘-픽업	(주)삼정피에스시 스템	110111	(주)삼정피에스시 스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4****	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전농동)			
168	26조134 8	투싼(TUCS ON)	주-메탈리더	110111	주-메탈리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남동공단 **블럭 *롯데(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9****	김*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번길 **			
169	26조136 3	카렌스LPG	주-메탈리더	110111	주-메탈리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남동공단 **블럭 *롯데(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9****	김*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번길 **			
170	인천31두 3067	엑셀오토매 틱	상탑다이아테크(주)	110111	상탑다이아테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남동공단 ***B-***L(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1****	정*호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번길 *, ***동 ***호(수정동)			
171	인천80머 5794	리베로슈퍼 캡장축	상탑다이아테크(주)	110111	상탑다이아테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번지 ***호 *롯데	2019. 1.15.	기타	2019. 2.11.

				61****	정*호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번길 *, ***동 ***호(수정동)			
172	인천81라 1260	포터초장축	고려이엔지(주)	110111	고려이엔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번길 **, 남동공단 **B-***L(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48****	이*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신정동)			
173	인천31루 6819	그랜저XG	고려이엔지(주)	110111	고려이엔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번길 **, 남동공단 **B-***L(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48****	이*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신정동)			
174	인천32마 6316	엔터프라이 즈	(주)스칸빅가구	110111	(주)스칸빅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번길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1****	이*형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폴로*번길 ***-, **동 B**호(효성동)			
175	인천73다 3688	스타렉스12 인오토	(주)스칸빅가구	110111	(주)스칸빅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번길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1****	이*형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폴로*번길 ***-, **동 B**호(효성동)			
176	인천2리3 489	그랜저	동인목재공업(주) 81	120111	동인목재공업(주)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36****	임*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번길 *, ***호(대흥동)			
177	인천30마 6246	그랜저	동인목재공업(주) 81	120111	동인목재공업(주)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번길 *, 남동공단 ***블럭*로트(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36****	임*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번길 *, ***호(대흥동)			
178	인천30라 9796	티코(TICO)	진명산업(주)	120111	진명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2****	이*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 ***동 *호(평창동)			
179	인천30누 8467	그랜저	(주)민우공영	120111	(주)민우공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남동공단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2****	이*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 ***동 *호(평창동)			
180	인천80나 7851	갤로퍼밴	(주)신세기종합건 설	120111	(주)신세기종합건 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구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49****	박*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연수동,)			
181	24더233 3	에쿠스	(주)신세기종합건 설	120111	(주)신세기종합건 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구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49****	박*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연수동,)			

182	인천30무 1387	쏘나타III2. 0	(주)삼덕엔지니어 링	120111	(주)삼덕엔지니어 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번길 **, 남동공단 ***-(남촌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2****	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 ***동 ****호(도화동,)			
183	인천80가 7665	현대3.5톤 트럭	(주)삼덕엔지니어 링	120111	(주)삼덕엔지니어 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번길 **, 남동공단**블럭*롯데(남촌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2****	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 ***동 ****호(도화동,)			
184	인천70너 1460	스타렉스12 인(STARE X)	(주)건일화학	120111	(주)건일화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예성아이라이프 ***호(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6****	김*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185	인천31가 2357	엑센트	(주)건일화학	120111	(주)건일화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예성아이라이프 ***호(논현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6****	김*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186	인천30더 2083	포텐샤오토	대아건설산업(주)	120111	대아건설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 정암빌딩 ***호(만수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3****	이*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길 **, ***호(반포동)			
187	인천30구 7276	엔터프라이 즈	대아건설산업(주)	120111	대아건설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 정암빌딩 ***호(만수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3****	이*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길 **, ***호(반포동)			
188	인천80거 8475	포터초장축 슈퍼캡	(주)진은기업	120111	(주)진은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 (구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9****	홍*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189	인천80러 2284	봉고프런티 어	(주)진은기업	120111	(주)진은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 (구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9****	홍*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서창동)			
190	인천3머2 485	그랜저	삼호건설(주)	120111	삼호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5****	정*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층(주안동)			
191	인천30도 7501	티코(TICO) 오토	삼호건설(주)	120111	삼호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5****	정*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층(주안동)			
192	86보678 8	포터초장축 슈퍼캡	삼원전자공업(주)	120111	삼원전자공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미로***번길 **, 남동공단 **B-*L(남촌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5****	장*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동 ***호(옥련동)			
193	03우639 5	쏘나타III1. 8DOHC	삼원전자공업(주)	120111	삼원전자공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미로***번길 **, 남동공단 **B-*L(남촌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5****	장*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동 ***호(옥련동)			
194	인천80거 7748	프린터어1. 4톤	(주)리더시스템	120111	(주)리더시스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간석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0****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			
195	인천2고6 690	포텐사오토	명진제재<주>	120111	명진제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46****	조*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 ***동 ***호(학익동)			
196	인천3노5 549	그랜저	명진제재<주>	120111	명진제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남동공단 *단지 ***블럭*롯데(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46****	조*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 ***동 ***호(학익동)			
197	인천33두 1636	NEW EF 쏘나타 GOLD(NE W EF SONATA)	(주)제일에프에이	120111	(주)제일에프에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 남동공단 **블럭**롯데(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8****	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가길 *, 지층(봉천동)			
198	인천80너 8517	포터초장축 더블캡	(주)제일에프에이	120111	(주)제일에프에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 남동공단**블럭**롯데(고잔동)	2019. 1.15.	기타	2019. 2.11.
				58****	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가길 *, 지층(봉천동)			
199	인천30거 3294	크레도스	태성기연(주)	120111	태성기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남촌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7****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나동 ***호(남촌동)			
200	인천7로1 452	와이드봉고 킹캡	태성기연(주)	120111	태성기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남촌동)	2019. 1.15.	기타	2019. 2.11.
				67****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나동 ***호(남촌동)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44번지, 논현동 66-99번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남동구 남촌동 644번지, 논현동 66-99번지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외)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유료화 시행 예정
남동공단 2호 공영주차장	남동구 남촌동 644번지	223	3급지	2019. 3. 1
소래5호 공영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9번지	105	1급지	

4. 월정기 주차요금

주차장명	구 분	급 지	월정기 주차권
남동공단 2호 공영주차장	노외	3급지	40,000원
소래5호 공영주차장	노외	1급지	100,000원

5.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1. 25 ~ 2018. 2. 22(28일간)

8.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 1. 22 ~ 2018. 2. 15(25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3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2호, 소래 2호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44번지, 논현동 66-99번지에 설치 되어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01.22. ~ 2019.02.06.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02.06.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유주 미상 이륜차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19년 0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8-57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1.16.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5 구월이노빌 1층
	2018-641(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8.12.24.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1번길 26 해맑은 부동산 건너편
	2018-641(2)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57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 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5 구월이노빌 1층	2019.01.16.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	2018-00641	번호판없음(2대)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 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1번길 26 해맑은 부동산 건너편	2018.12.24.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744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7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01.22. ~ 2019.02.06.
3. 공고대상 : **다8582 외 4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 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 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 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18-004 96	**다8582	포터초장축 슈퍼캡(POR TER)	논현동 111-391 소래대교 하단부(어시장 가는 좁은 골목길 입구)	이*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개로**1번길 3*-1*, *0*호(논*동)	2018.12.14 2019.01.07	기타	2018.12.11	기전폐차장	032-814- 4400	
2	2019-005 36	**버7410	코란도	(운연동 258) 음실서로 33 팝모터스(주) 앞	박*규	경기도시흥시정*대로**6 번길*, *0*동 *0*호(정*동, **아파트)	2018.12.14 2019.01.07	기타	2018.12.11	기전폐차장	032-814- 4400	
3	2018-005 38	**오6391	스타렉스(S TAREX)	(만수5동 918-15) 현광아파트 담벼락	김*영	인천광역시남동구백*로** 6번길*7, *0*호(만*동, 삼*그*빌라)	2018.12.14 2019.01.07	기타	2018.12.12	기전폐차장	032-814- 4400	
4	2018-005 39	**더4220	싼타페	장수동 787-19 봉황빌딩 옆 장수당약국 옆	심*식	경기도 연천군 군*면 황*로**번길 **	2018.12.14 2019.01.07	기타	2018.12.11	기전폐차장	032-814- 4400	
5	2018-006 01	**누3678	라세티 1.8 DOHC	(만수6동 1014) 장승남로33번길 23 남동아파트 105동 뒤(복도방향) 주차장	김*수	인천광역시남동구장*남로 **번길*3, *0*동 *0*호(만*동, 남*아*트)	2018.12.14 2019.01.07	기타	2018.12.10	기전폐차장	032-814- 44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인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의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검토주기를 5년으로 함.(안 제3조)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973, FAX 453-29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1월 25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인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검토주기를 5년으로 함.(안 제3조)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설치 시설물 중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관리를 위한 배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검토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한다.

②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로 신설 및 확장,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타당성 검토 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인허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공고된 배치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배치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배치계획의 고시) 배치계획 등을 수립·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가 완료되면 배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참고자료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생략 -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5. 2. 5.>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제2019-2호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1. 28

4.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1,5030/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1부.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24
----------	------

발의년월일 : 2019년 1 월 22 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이유경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및 남동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구민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자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

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권리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일터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권리존중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호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작성자 : 남동구의회 신 동 섭 의원 (인)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3호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1. 28

4.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1, 5030/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부.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이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25
----------	------

발의년월일 : 2019년 1 월 일

발 의 자 : 이유경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4명

☐ 제언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10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참고자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관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선진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인)

[참고자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하 "중소기업정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 1. 27.>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삭제 <2016. 4. 26.>[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6. 30.]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4호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1. 제안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15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화학사고 발생시의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1. 28

4.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1, 5030/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6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2일

공동발의자 : 황규진,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15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화학사고 발생시의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참고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제4조, 제6조, 제12조, 제41조, 제43조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2.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3. 인천남동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4.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5.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6.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7.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9.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 ③ 구청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작성자 : 남동구의회 황 규 진 의원 (인)

[참고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이하 생략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5. 29.]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안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5호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3 ~ 1.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27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8명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보호 사업
5.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전문개정 2011. 8.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8조(지원사업 등), 제9조(실태조사)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정재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업무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 및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비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
(안 제4조제1항제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3 ~ 1.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우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9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이용우,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이선옥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업무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 및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비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
(안 제4조제1항제4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 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제3항제1호 중 “건축”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별표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 사업<제4조제1항제4호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70	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0	30	

별표2의 제목 중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예산, 건설, <u>건축</u> ,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2. ~ 4.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u>공동주택</u> ----- ----- 2. ~ 4. (현행과 같음)

[별표1]

현행	개정안												
1. 지원비율 가. ~ 다. (생략) <u><신 설></u>	1. 지원비율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 사업 <u><제4조제1항제4호 각목></u> <table><tr><th>지 원 사 업</th><th>구 분담률</th><th>공동주택 분 담 른</th><th>비고</th></tr><tr><td>1.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td><td>70</td><td>30</td><td></td></tr><tr><td>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70</td><td>30</td><td></td></tr></table>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른	비고	1.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70	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0	30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른	비고										
1.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70	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0	30											

[별표2]

현행	개정안
<u>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한도</u> (제4조 관련)	<u>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u> (제4조 관련)

[참고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7호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및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3 ~ 1.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이정순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30
----------	------

발의년월일 : 2019년 월 일

발 의 자 : 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및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안 제13조, 안 제14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제93조제1항제20호
-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7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 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남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건설교통국장
2. 자동차관리과장
3.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장
4.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
7.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8.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새로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다 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의 각호의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단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연임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정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8호

남동구 창의 ·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창의 ·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3 ~ 1.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8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일
발 의 자 : 유광희, 조성민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 의원 외 8명

☐ 제안이유

-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5조의2
- 「진로교육법」 제5조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창의·인성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생명안전 체험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 교육기본법 제4조, 제5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제5조의2 ☐ 진로교육법 제5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4조, 제5조**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제5조의2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8.]

□ 진로교육법 제5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사업의 지원)에 따른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유광희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1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2. 8.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4. 공 고 기 간 : 2019. 1. 23. ~ 2019. 2. 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7 -0199278	최훈의보물창고	최*	인주대로763번길 50 (구월동,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7-11-08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7 -0199487	엘케이코리아	김**	경인로 742 (간석동, 대진빌딩 30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3-25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061	웰리스클럽	김**	은봉로 288, 707동 2202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4-20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600	마임 간석북부지사	조**	백범로 322 (간석동, 진메디칼센터 6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9-30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604	해승브릿지	(주)해승브릿지 허**	구월남로 163 (구월동, 토성프라자 303호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3-31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654	한국다이와	신**	경인로 549 (간석동, 3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9-15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760	네이처스페눔 코리아	이**	예술로 230 (구월동, 청진네오스빌 62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6-15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801	클린존	류**	용천로 147 (간석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10-01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922	홍삼팜	정**	호구포로 802 (구월동, 4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8-27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 -0199923	민트	황**	구월로37번길 20, 4동 204호 (간석동, 동국아파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1-21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059	(주)샵기어(휴림)	(주)샵기어 송**	호구포로 818 (구월동, 11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8-31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092	마임 간석남부지사	김**	남동대로 895 (간석동, 2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07	2019-02-08
건강기능식품	2009	허브슬리밍	조**	용천로21번길 12 (구월동,	사업자등록	2012-05-30	2019-02-08

일반판매업	-0199187			한마음씨티빌 2/402)	폐업(말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193	슬림피트	강**	남동대로726번길 15-31 (구월동, 진영주택 30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01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250	비겐의료기 남동홈센타	안**	구월말로 59 (만수동, 2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20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249	다이어트후	김**	구월말로58번길 41-11 (만수동, 10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12-31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331	대장송	강**	문화로169번길 92 (간석동, 2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30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375	천지인산삼	임**	용천로152번길 28 (간석동, 기호주택 40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1-30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456	정여원상사	정**	독곡로48번길 9, 103동 108호 (서창동, 서해아파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6-30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459	허브	윤**	호구포로810번길 42-3 (구월동,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1-02	2019-02-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 -0199529	효플러스	김**	문화서로4번길 41-5 (구월동,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9-03	2019-02-08

6.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2019. 02. 07.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2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21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① 정비시범구역은 「간석역 북광장 간판개선 사업」의 대상인 제일코아상가(석정로 515)와 온누리상가(방축로 503)로 지정한다.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 간판, 연립형 지주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 또는 시트지 등 유리창에서 돌출되지 아니하게 부

착하는 창문이용 광고물과 연립형지주이용광고물,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벽면을 이용한 연립형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③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를 금한다.

⑤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한다.

⑧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간판의 가로 크기는 15m 이내로 해당 업소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디자인된 베이스판은 최대 1m 이내로 하고, 베이스판 위에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의 세로크기와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c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2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5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크기는 벽면폭 이내로 하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m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④ 건물의 지하나 1층의 내부 업소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벽면에 세로크기 50c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만 허용되며 업소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주를 이용한 연립형간판 1면의 총 표시면적은 6㎡ 이내의 판류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전탑과 유사한 기둥형태(사각기둥,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입체형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제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종이, 시트지 등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착식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세로 크기는 1층은 30c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표시한다.

$$(2\text{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3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text{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문자 등의 광고내용은 가로쓰기 형태로 1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사후관리)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협의체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적용의 특례) ①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자가 이 고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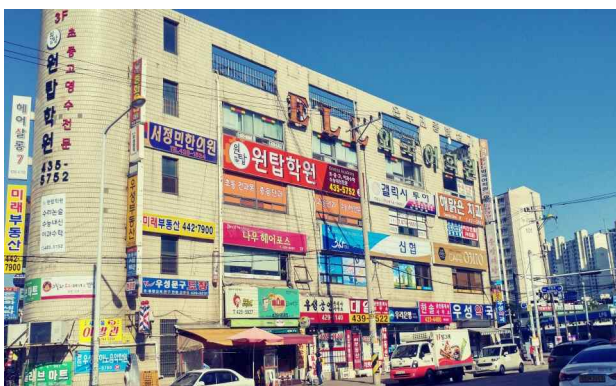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을 인정한다.

③ (기타사항)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붙임 1】

□ 정비시범지역 위치도



우성아파트 상가(전면)



우성아파트 상가(측면)



제일코아 상가(전면)



제일코아 상가(측면)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30-11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11번길 80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205번길	30-11	2009.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1.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논고개로 205번길30-11 기초구간에위치하여30-11을건 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7-19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20m지점에서 오른쪽으 로 분기하는 도로	2019.01.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남동서로 362번길37-19 기초구간에위치하여37-19을건 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8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23번길	51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 기하는 도로	2019.01.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문화서로 23번길51 기초구간에위치하여51을건물번 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1 1번길	80	2009.11.16	인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1.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하로41 1번길80 기초구간에위치하여80을건물번 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93	2009.11.16	앵고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1.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앵고개로 815번길93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을건물번 호로부여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11번길	80	2019.0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8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16-7	2019.0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93	2019.01.22	건물군 내 일부건물폐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의 수립 및 행위허가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간선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간선도로 중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수량을 말한다.
4. “배치지점”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위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배치계획에 포함한다.
5.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배치계획)

1.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1의 신규 배치노선에 한하여 신규 배치노선의 배치지점이 변경되거나, 장수동 488-3번지 외 2필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또는 연계될 행위허가가 취소 될 경우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허가 신청)

이 배치계획에 따라 신규 배치노선의 배치지점에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3과 별표4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허가 신청자격)

제4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표2에 따라 각 호를 만족해야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제5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1회에 한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기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하여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배치지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6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이 고시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남동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충전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추가검토) 이전 고시 후 변화된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에 따른 배치계획 변경 여부는 타당성 조사 후 2019년 12월31일 이전까지 결정한다.

문 의 처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 배치계획

구분	노 선 명 (해당 도로)		구 간 현 황			연장	충전소 배치수	비 고
			구 간	시점	종점			
당초	당초	남부경찰서 - 구산로	1구간	구월동 786번지	구월동 561-1번지	6km	2 (방향별 1개소)	기 허가완료 (노 선 현행화)
	변경	남동대로- 비류대로- 호구포로						
	당초	동부교육청 - 시흥시계	2구간	만수동 576-1번지 576-7번지	시흥시계	3km	1	
	변경	인주대로- 수인로 (시흥방향)						
변경 (추가)	백범로 - 수인로 -인주대로 (남동정수사업소 → 동부교육청 방향)		3구간	만수동 590-2번지	만수동 576-1번지	3km	1	- 배치지점 - 장수동 488-3번지 장수동 488-9번지 장수동 489번지

▣ 위 치 도 (금회 추가)



■ 위 치 도 (기존 충전소 배치 현황)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신청자

구 분	비 고
○ 도심의 기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 남동구 관내 충전소 운영자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거주자가 1회에 한하여 설치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의 정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거주자라 함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1972년 8월 25일)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별표 3】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행위허가신청서 (세움터를 통한 전자 접수) 2. 행위허가신청 첨부 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기타 행위허가 관련 검토해야 하는 서류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4.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예정일 기재) 5. 토지등기부등본 6.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7.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및 심사요청서 (별지1서식) 8.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세움터를 통한 전자접수

【별표 4】

개발제한구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제2항제3호)

충전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u>해당 개발제한구역</u> ¹⁾ 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사유서 및 증빙자료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별지 제1호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19.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별표 4】 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 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2호, 2018. 9.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3917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0, 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중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갯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별표 2] <개정 2014.11.24.>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 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3) 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나) 가스관·전기관: 1.0미터 이상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괴(倒壞)·낙하·벗겨짐·오손(汚損)·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

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의 노면 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쪽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27.] [인천광역시조례 제5525호, 2015.7.2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
괴(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
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
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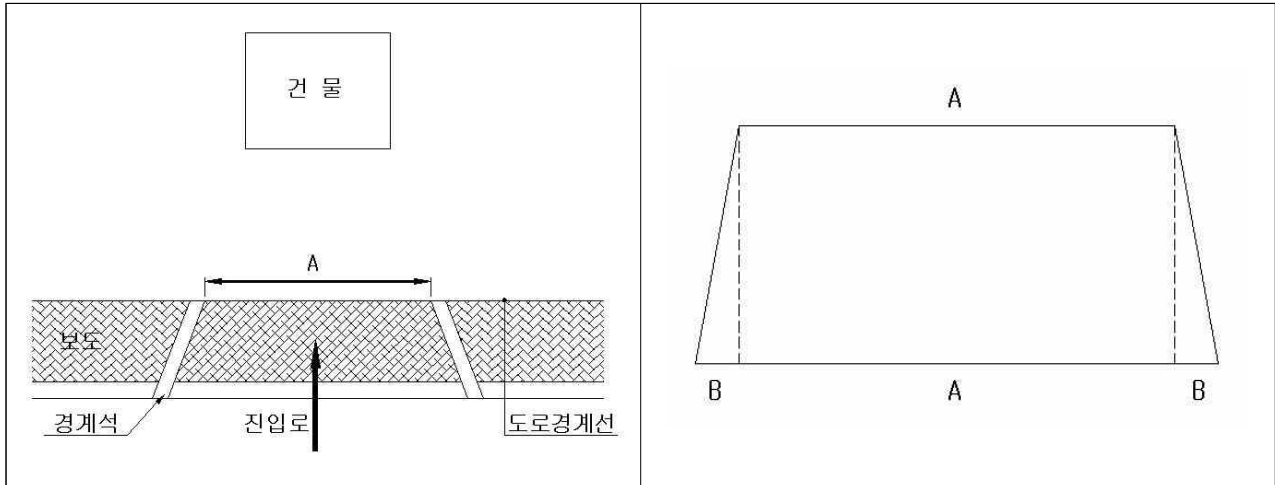
[별표]

시 공 기 준

(1) 평면도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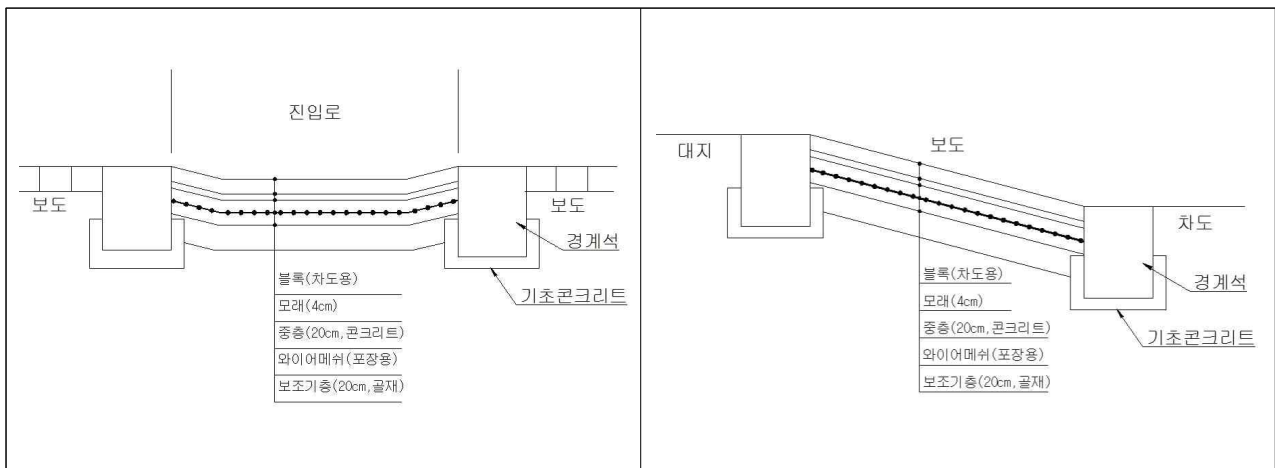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4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5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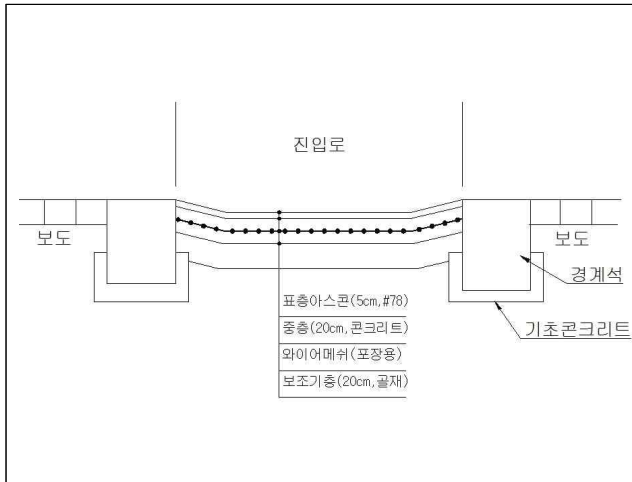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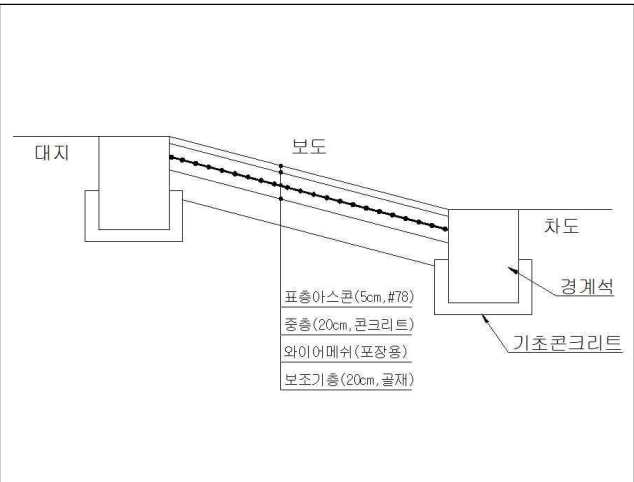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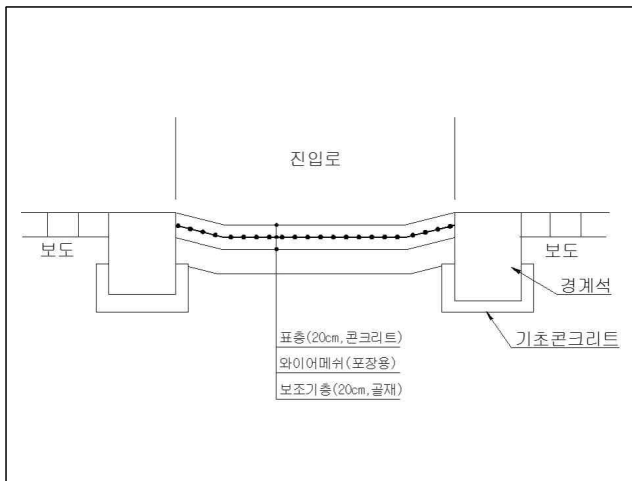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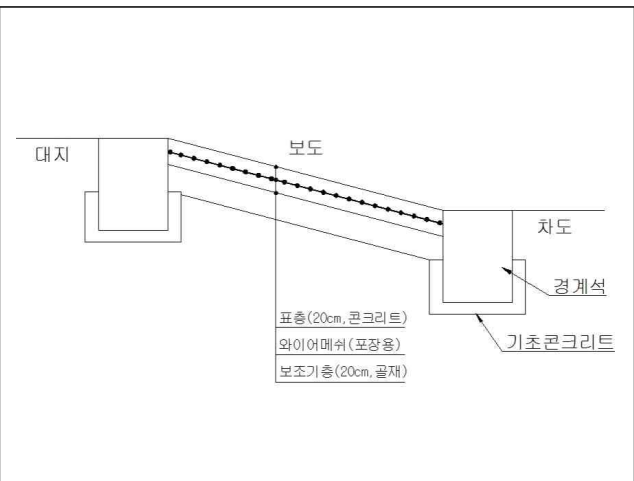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별표 5] <개정 2014.12.29.>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0	직접식 가속차로	

		(15)	(10)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 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 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항목부터 항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표기된 “수도권” 행정구역임.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호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2019. 1.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간석동 616-6번지(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4. 사업시행자 성명 :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일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1번길 7, 삼미빌딩 3층)
5. 준공인가의 내역(준공인가일: 2019.01.25.)

○ 부지조성

계	공동주택부지	도로	노외주차장
24,356.2㎡	23,085.7㎡	1,086.8㎡	183.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준공인가 별도			

○ 공동주택 건립

주용도	세대수	층수	동수	건폐율	용적률
아파트	643세대	지하2층/ 지상26층	9개동	20.63%	284.58%

※ 전용면적 59㎡ 203세대, 74㎡ 142세대, 84㎡ 298세대

6. 의제처리 사항
7. 부지조성 내역 중 도로,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사항. 끝.